# 고 문 계 약 서

㈜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(이하 "갑")와 <u>김 형 준 (이하 "을")</u>간에 다음과 같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## 제1조 (계약기간)

"갑"은 2013 년 1월 1일부터 2013 년 12월 31일까지 "을"을 고문으로 채용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사가 지원한다.

# 제 2 조 (업무영역)

"을"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원익아이피에스 신규사업 업무
- ② 원익아이피에스 국내·해외 비즈니스 지원 업무

### 제 3 조 (보수)

보수는 총 (108,605,000)원이며, 12로 나누어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전일 지급한다.

# 제 4 조 (지원사항)

"갑"과 "을"은 독립 계약 관계로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래 항목으로 한정한다.

- ① 유류대 : 출퇴근, 외근, 출장시 유류대 실비정산 (자차 교통비 실비정산 기준에 따름)
- ② 통행료: 업무수행으로 발생되는 통행료 실비정산
- ③ 차량보험료 : 차량 보험료 지원 (1년)
- ④ 식대 : 중식은 회사가 지원 (조,석식 이용시 2,000 원/회 급여 공제)

## 제 5 조 (비밀 누설의 금지)

- ① "을"은 본 계약 기간 및 계약 만료 또는 종료 이후 3년 간 본 고문 업무를 통하여 갑"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및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.
- ② "을"은 "갑"의 요구가 있는 경우, 즉시 "갑"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제반 자료를 반화하여야 한다.
- ③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고 본 계약서를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, 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, 본 계약서에서 언급된 상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"을"이 본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"갑"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"을"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 6 조 (성실의무)

"갑"은 "을"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며, "을"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성실의 의무가 있다.

#### 제 7 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위 약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"갑"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고한 날 이후부터 회사지원 사항은 중지한다.
-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호 통보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며, 본 계약의 만료 전발생한 "을"의 유류대, 통행료는 "을"의 청구가 있을 시 회사 지급기일에 따라 지급한다.
- ③ 고문기간 중 "을" 이 재취업시에는 "갑"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, 그 시점에 계약이 만료 되는 것으로 한다.

### 제 8 조 (일반 조항)

- ① 본 계약에서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"갑"과 "을"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,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툼 발생 시 "갑"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한다.
- ② "갑"은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고문의 방식, 업무 형태 등 기타 "갑"이 본 고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"을"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, 당해 통보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위의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"갑"과 "을"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13년 1월 1일

"갑":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

대표이사 이 무 용

"을" 성명: 기 하는 군 1960

주민등록번호 : 64065 - 1140 14